

아시아퍼시픽국제외국인학교 학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교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사랑과 헌신으로 교육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기반으로 동서양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환태평양시대의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 2009. 12. 31>

제 2 조 (명칭) 본교는 아시아퍼시픽국제외국인학교 (Asia Pacific International School)라 칭한다.

제 3 조 (위치) 본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 45가길 57에 둔다. <개정 2021. 1. 15>

제 2 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제 4 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1. PreKindergarten (유치원준비과정) 1년
2. Kindergarten (유치원) 2년
3. 초등학교 5년
4. 중학교 3년
5. 고등학교 4년

<개정 2009. 12. 31>

제 5 조 (입학자격) 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 법령이 정하는 입학자격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의 자녀 (부모중 1인이라도 외국인이면 가능) <개정 2021. 1. 15>
2. 해외 3년 이상 장기거주 후 귀국한 내국인 <개정 2009. 12. 31>
3. 귀화자의 자녀로써, 기존에 다니는 국내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장이 학업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한 내국인 <본조신설 2021. 1. 15>
4.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해외인재로 인정된 자의 자녀는 정원의 입학 허용 <본항신설 2026. 3. 11>

제 3 장 학년, 학기, 및 휴업

제 6 조 (학년, 학기)

(1) 학년은 다음과 같다.

1. PreKindergarten 1학년
2. Kindergarten 1학년, 2학년
3.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4.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5.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개정 2009. 12. 31>

(2) 각 학년별 학기는 4분기로 나누되 제 1분기와 제 2분기는 8월 중순부터 12월 하순까지, 제 3분기와 제 4분기는 1월 초순부터 6월 중순까지로 한다. 단, 매학년도 학기일은 학사일정에 따라 약간씩 변경 될 수 있다. <개정 2023. 8. 30>

제 7 조 (휴업일)

(1) 휴업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경일 및 공휴일
2. 명절 (설, 추석) 공휴일
3. 추수감사절 휴일
4. 부활절 휴일
5. 여름방학
6. 겨울방학
7. 개교기념일

(2) 제 1항 외에 각호의 휴가 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11 조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를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4)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경우 등교 또는 실습을 부과할 수 있다.

제 4 장 학급수 및 학생정원

제 8 조 (학급) 본교의 학급수는 총 32학급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제 9조 (학생정원) <개정 2021. 1. 15>

(1) 학생정원은 총 800명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 각 학년당 정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24>

	학년	학급수	정원
PreKindergarten	1학년	1	10
	소계	1	10
Kindergarten	1학년	1	10
	2학년	1	20
	소계	2	30
초등학교	1학년	2	50
	2학년	2	50

	3학년	2	50
	4학년	2	50
	5학년	2	50
	소계	10	250
중학교	1학년	2	70
	2학년	2	70
	3학년	3	70
	소계	7	210
고등학교	1학년	3	75
	2학년	3	75
	3학년	3	75
	4학년	3	75
	소계	12	300
합계		32	800

제 5 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교사

제 10 조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미 교육부 인가 (WASC) 교육과정에 준한다. <개정 2009. 12. 31>

제 11 조 (수업일수) 연간 총 수업일수는 각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한다.

제 12 조 (교사)

- (1) PreKindergarten 부터 초등학교까지는 담임교사 또는 해당과목교사의 책임 하에 정기 중간교사와 기말교사 외에 필요시마다 실시한다.
- (2)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해당 담당 과목 교사의 책임 하에 정기 중간교사 및 기말교사 외에 필요시마다 실시한다. <개정 2009. 12. 31>

제 6 장 수료 및 졸업

제 13 조 (수료, 졸업)

- (1)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평상 시의 성적을 평가하여 결정한다.
- (2)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매분기 결석 일수가 7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 14 조 (학위증 수여) 학교장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제 7 장 전학, 입학 및 재, 편입학

제 15 조 (입학 시기) 입학 시기는 매 학년 초인 8월 중순 경으로 한다.

제 16 조 (입학 허가) 본교의 학칙 제 5 조에 해당되는 자로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서류심사, 면접 및 필기시험을 거쳐 학급 배정 등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9. 12. 31>

제 17 조 (전, 편입학) 본교에 전,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본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 16 조에 준하는 심사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 18 조 (재입학) 본교를 자퇴 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심사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 19 조 (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본교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입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입학자격에 관한 서류
- (2) 입학원서
- (3) 예방 접종 기록부
- (4) 입학 전 취학한 학교의 성적표
- (5) 학력평가 기록부 <개정 2009. 12. 31>

제 20 조 (전, 편입학 서류) 본교에 전, 편입학을 위해서는 본교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제 21조 (서약서) 입학 (전, 편입학, 재입학 포함)을 허가 받은 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보증인 연서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22 조 (보증인)

- (1)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 (2) 보증인은 학생과 같은 거주지 내에 생활하면서 학생의 모든 학업생활에 대한 책임을 진다.
- (3) 보증인이 그 신상에 변동이 있을 시는 즉시 학교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한다.

제 8 장 휴학, 퇴학 및 상벌

제 23 조 (휴학)

- (1)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첨부하고 보증인이 연서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 (2)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특별히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교과과정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제 24 조 (자퇴) 스스로 퇴학 (타교 전학을 포함) 하고자 하는 자는 2주전에 그 사실을 학교에 통지하여 교장과 인터뷰(Exit 인터뷰)를 진행하여야만 한다. 성적증명서 발급은 미납된 금액이 없음을 확인한 후 진행되며, 학생은 퇴교폼(Withdrawal Form)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4>

제 25 조 (표창)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근면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제 26 조 (징계)

- (1)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부모에게 이를 통보하고 학생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
- (2) 징계는 그 정도에 따라 교내 봉사, 근신, 정학 및 퇴학으로 한다.

제 27 조 (퇴학처분) 학교장은 학생의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이수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4.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집단적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한 자.

제 9 장 수업료 및 입학금

제 28 조 (수업료, 입학금, 기타 비용 징수)

- (1) 수업료, 입학금 및 기타비용 징수는 매년 해당년도 학교 예산에 맞추어 금액을 산정 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6. 6. 24>
- (2) 다음 학사년도에 대한 1항의 수업료, 입학금 및 기타 비용의 금액과 징수에 관하여는 학교장이 매년 4월말까지 정하여 공지하고 학교 홈페이지(apis.org)에 게시한다. <신설 2026. 6. 24>

제 29 조 (체납자 조치) 2개월 이상 학비를 체납한 경우 학부모에게 통보 후 학생의 출석 정지 및 퇴학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제 30 조 (장학금) 학생의 재정적 사정을 고려하여 성적과 서류 심사를 거쳐 학비 일부를 장학금으로 대체한다. <본조신설 2009. 12. 31>

제 31 조 (환불) 수업료와 버스비는 다음 일정에 따라서 환불이 가능하다. 환불이 가능한 부분은 일시납으로 납부한 수업료 및 일시납으로 납부한 버스비용에 제한한다. 따라서, 입학원서 전형료, 입학금, 등록비, Senior Fee, 수업료 중 미화 부분, 분납으로 납부한 수업료 및 분납으로 납부한 버스비용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전쟁, 내전, 파업, 자연 재해 등 대규모의 재해가 있을 때에는 환불이 가능하지 않다. <본조신설 2023. 8. 30><개정 2025. 03. 04>

환불 일정 (일시납으로 납부한 수업료 및 일시납으로 납부한 버스비용에만 적용. 입학원서 전형료, 입학금, 등록비, Senior Fee, 수업료 중 미화 부분, 분납으로 납부한 수업료, 분납으로 납부한 버스 비용은 환불되지 않음)	
날짜	환불
매년 7월 31일까지	일시납 수업료의 80% 일시납 버스비의 90%
제 1분기 시작 1일전까지	일시납 수업료의 75% 일시납 버스비의 80%
제 1분기 종료 4주전까지	일시납 수업료의 70% 일시납 버스비의 70%
제 1분기 종료일까지	일시납 수업료의 60% 일시납 버스비의 60%
제 2분기 종료일까지	일시납 수업료의 40% 일시납 버스비의 40%
제 3분기 종료일까지	일시납 수업료의 20% 일시납 버스비의 20%
제 4분기 시작 이후	일시납 수업료의 0% 일시납 버스비의 0%

제 10 장 교장, 교원의 자격 및 임무에 관한 사항

제 32 조 (교장의 자격 및 임무) 교장의 자격은 다음 각호를 갖춘 자이어야 한다.

- (1) 학사 학위 이상으로서 교사 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석사 학위 이상인 자.
- (2) 미국 WASC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인증 기관이 요구하는 교원자격을 충족하는 자. <본조신설 2009. 12. 31>
- (3) 교장은 본교 학사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설립이념에 맞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학문적 기준을 유지해야 할 임무가 있으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여 학생을 교육한다. <신설 2026. 6. 24>

제 33 조 (교원의 임용기준 및 면직)

- (1) 교원의 임용기준은 학사 학위 이상 학력과 미국 WASC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교원자격을 충족하는 자.
-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교원은 면직할 수 있다.

1. 대한민국법률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2. 본교 교사지침서를 준수하지 않은 자. <본조신설 2009. 12. 31>

제 11 장 보칙

제 34 조 (학칙개정) 본교의 학칙은 학교장의 신청에 의하여 개정되며, 변경된 학칙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보고한다. <개정 2023. 8. 30>

부칙

제 1 조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조 (시행일)

1. 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2. 이 학칙은 2009년 12월 31일로부터 시행한다.
3. 이 학칙은 2021년 1월 15일로부터 시행한다.
4. 이 학칙은 2023년 8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5. 이 학칙은 2025년 3월 4일로부터 시행한다.
6. 이 학칙은 2026년 3월 11일로부터 시행한다.
7. 이 학칙은 2026년 6월 24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에 대한 경과 조치)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에 대한 기준은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 12. 31>

제 4 조 (기존의 재학생에 대한 경과 조치)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 시행 당시 재학 중인 학생은 제 5 조의 입학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 12. 31>